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3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김문수ㆍ이수진ㆍ이재강

양부남 • 이용우 • 이재관

문금주 · 조계원 · 양문석

위성곤 • 민형배 • 백승아

박지원 · 이광희 · 문대림

의원(15인)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 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
- 나.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 6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91호)과「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2 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에서"를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84조의2 중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제44조·제45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u><삭</u>
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제>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	
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u>선거에서</u> 특정 정	② <u>선거에서 그 지위</u>
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를 이용하여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3
<u>제1항과 제2항</u> 에 위배되는 행	제2항
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	
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	
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u><삭 제></u>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u>등으로 정한다.</u>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	<u><삭 제></u>
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u>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u> 무원은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 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4조의2(벌칙) <u>제44조·제45조</u> 저 <u>또는 제66조</u>를 위반한 자는 다 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84조의2(벌칙)	<u>제44조ㆍ제45조</u>